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

〈전직장려수당〉

2023. 4

목 차

I. 개요	1
II.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3
가.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3
나. 지원금액	4
다. 신청방법	5
라. 지원절차	6
마. 지급방법	7
바. 수급권의 보호 등	7
III.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8
[별지1] 전직장려수당 지급신청서	9
[별지2] 확약서	10
[별지3]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11
[별지4]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2
[별지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13
[별지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희망계좌 명의인)	15
[별지7]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서	16
[별지8]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 제외 업종	17

I.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 (대상)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및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 지원대상 취업교육 >

구분	'21년 교육	'22년 교육	'23년 교육
대상교육	①희망리턴패키지 직무직능교육 (재기캠프, 노란우산공제 특화과정 포함)	①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전직기초교육, 노란우산 공제교육, 전직특화교육)	①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 (재취업 기초교육, 재취업 심화교육, 재취업 특화교육)

** 구직활동 : ①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AP ②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③재취업 특화교육

*** 취업완료 : 근로기준법 제2조, ①항의 1 "근로자"로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속)기간이 30일 이상 <개정 2022.6.13.>

- (기간) '15년 ~ 계속

- 모집 및 지원기간은 사업 당해년도 공고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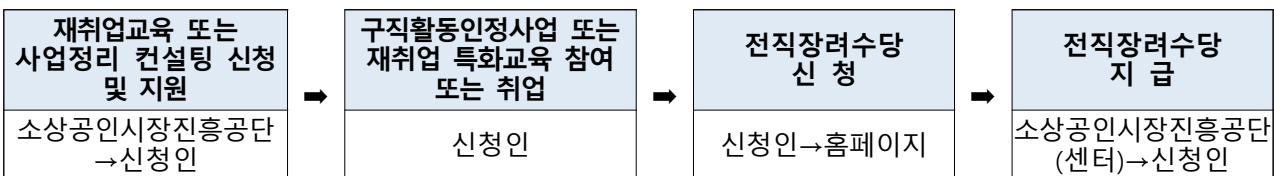
□ 세부내용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구직활동인정사업과 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 참여 순서 상관없음(수료여부만 확인)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공 통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구직활동 증인자 (①,②,③중 택 1)	①재취업 기초교육 수수료 + 심화(특화)교육 수수료	
		②재취업 기초교육 수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수수료(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취업한 자 (④,⑤ 모두 준용)	③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수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수수료(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신청 조건	신청기간	■ 재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리스타트패키지 참여확인서
취업 후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퇴사 시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지원) 인당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가.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1) ①재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 ②폐업신고 완료, ③취업활동 또는 취업한자로서, 지급 방식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사업장 폐업신고(공통)

- * 신청인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 후 신청 가능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

나) 재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공통)

- *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자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수료하였을 경우 각각 지원 가능

- 다) 재취업 기초교육^① 수수료 후 재취업 심화^{②(특화)}^③교육 과정을 수료한 경우(1차 40만원),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수수료와 구직활동인정사업을 한 경우(1차 40만원)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와 구직활동인정사업을 수료한 경우(1차 40만원) 및 1차 수당 지급 후,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만원)

- ① 재취업 기초교육 : 공단에서 제공하는 e러닝 콘텐츠 학습 교육(5Hr)
② 재취업 심화교육 : 취업 마인드셋, 모의면접 등 현장형 취업심화교육(20Hr)
③ 재취업 특화교육 : 기업 및 유관기관 연계 현장형 취업특화교육(과정별 상이)

- 라) 재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하고, 수료한 날부터 14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이어야 함

- * 단, 취업일은 재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후(신청일 포함)여야 함

- ** 모든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

2) 신청인이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또는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도 환수할 수 있음

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별지8]

나) 취업교육 또는 컨설팅 신청 전 취업자

ex) 3월 2일에 취업하고, 3월 3일에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 → 환수 대상

ex) 3월 3일에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하고, 3월 3일에 취업 → 환수 미대상

다) 재창업·업종전환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신청기한 초과

① 컨설팅 완료 또는 재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② 컨설팅 또는 재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근속 30일 이상 포함)하지 못한 경우

마)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바) 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휴폐업 조회 시 사업자등록 확인)

* 매출유무 및 개업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사업장은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에 해당 함

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제2조, ①항의 1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개정 2022.06.13.>

나. 지원금액

1)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최대 1백만원을 지급함

가) 재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신청인의 폐업, 취업 활동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전직장려수당 지급 상세 기준 >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액(원) (소득세포함)
공통	소상공업 폐업(필수)		
분할 지급	1차 (①,②,③ 중 택 1)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수료+구직활동인정 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400,000 (512,810)
	2차 (④,⑤ 전체 준용)	④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600,000 (769,220)
일괄 지급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현장, e러닝),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1,000,000 (1,282,050)

- *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가계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 원천징수금액=지급액-소득세(지급액×20%)-지방소득세(지급액×20%×1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
- * 일괄지급 시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수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2) 신청인이 '가.지원대상및지원요건 - 2)지원대상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1) 기한 내 다음의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동의서	온라인 제출
	②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④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발급
취업 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리스타트패키지 참여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
취업 후	① 근로계약서	신청자가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퇴사 시	① 경력증명서	신청자가 퇴사한 기업에서 발급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열람·이용 동의 시 폐업사실증명원(공통②) 생략 가능
- ** 공무원 취업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서(별지2)를 포함한 재직증명서류 등 취업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2) 타인명의 계좌 신청자는 공통서류 및 타인명의 계좌이용 추가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타인명의 계좌이용 시 추가제출 >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3]직접작성
2	계좌이용 동의서 및 약약서	[별지4]직접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4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타인명의 계좌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5]직접작성
6	신용평가보고서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3)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을 분할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할 때마다 별도 신청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라. 지원절차

- 1) 지역센터 담당자는 신청인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회계법인 검토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함
- 2)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함
- 3) 단, 관리기관의 예산 집행마감 등의 사유로 회계법인 검토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4) 지역센터 담당자는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 5) 신청인이 지역센터 담당자의 필수 또는 추가 서류 보완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응하지 않을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6) 지역센터 담당자의 필수 또는 추가 서류 보완요구에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처리할 수 있음

마. 지급방법

- 1)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등 본인계좌를 통한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을 허용함
- 2) 타인명의계좌는 전직장려수당 지급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으로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협약서」(별지4) 제출하여야 함
- 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및 동의서 및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4) 전년도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였어도 전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바. 수급권의 보호 등

- 1)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2)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 * 전직장려수당 지급 관련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의 사유로 부과액의 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지급확인서 발급
 - ** 1차 수당 지급 후, 취업완료기한 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차 수당 미지급(1차 지급으로 생애 1회 지원 종료)
- 3)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은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4개월 이내(공휴일 포함)며,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4) 환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수 가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Ⅲ.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 발급목적

-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을 통한 신속한 취업 지원제도 연계

□ 세부내용

- (발급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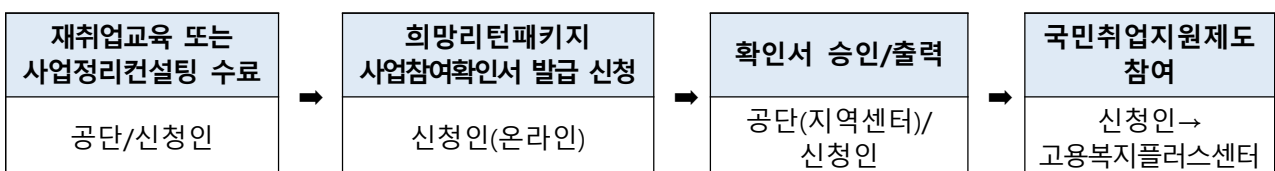
- 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취업교육 수료
 나. 신청일 기준 15세 ~ 69세 이하
 다. 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 3억원 미만
 *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1월~12월)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 2개 반기로 계산
 ** 사업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매출로 환산 후 12를 곱하여 계산
 라. 소상공인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함
 [※유의사항]
 -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관할고용센터 소관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 (첨부서류)

제 출 서 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 (발급절차)



<별지1>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구분	수료 및 완료 내역	<input type="checkbox"/> 사업정리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취업교육 <input type="checkbox"/> 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nput type="checkbox"/>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input type="checkbox"/> 취업완료(<input type="checkbox"/> 재직중 <input type="checkbox"/> 퇴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컨설팅 또는 교육신청일	20 년 월 일	컨설팅 또는 교육 참여기간	~		
	사업장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 기준)		20 년 월 일			
	취업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리스타트패키지 수료일		20 년 월 일	
			취업일		20 년 월 일	
			직장명			
			근로 계약기간		~	
			주당 근로시간		()시간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월급(세전)		()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희망계좌 (<input type="checkbox"/> 본인계좌, <input type="checkbox"/> 타인계좌) * 타인계좌 지급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만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불가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div>						
구비서류 : 첨부파일 첨부(①~④) ①폐업사실증명원 1부, ②국민취업지원제도, 리스타트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서류 1부,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5]						

<별지2> 확약서

확약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신청 후 취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약하며, 취업한 기업의 특성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대신 별도의 취업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로 취업완료에 대한 증빙을 대신합니다.

이후 제출한 취업증명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 위조서류로 밝혀진 경우, 지원받은 수당 전액 회수와 더불어 공문서 위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취업처 : _____

본인 : _____ (서명, 인)

<별지4>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가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에게 지급될 ‘전직장려수당’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 재기플래너)**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신청일 및 참여기간, 사업장 폐업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구.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인 취업일(해당 시), 직장명(해당 시), 근로 계약기간(해당 시), 주당 근로시간(해당 시), 근로형태(해당 시), 월급(세전, 해당 시), 지급계좌번호 및 은행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국회,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 재기플래너**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진흥기금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세청 :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폐업자 멘토링 연계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연구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용역업체, 재기플래너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혜 지원, 연계 사업 지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p>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당사와 귀하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공동망 조회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p>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와 귀하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등본 ■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p>본인은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기타 고지 사항></p> <p>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장려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에서 소득신고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4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타인명의 계좌 이용시 희망계좌 명의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전직장려수당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직장려수당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직장려수당 신청인과의 관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

<별지7>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		휴대폰	

2. 신청인의 사업단계(1개 항목만 선택)

<input type="checkbox"/> 폐업예정자	<input type="checkbox"/> 기 폐업자
--------------------------------	--------------------------------

3 사업장 현황

업체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증빙	<p style="text-align: center;">만원</p> <p>① 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 ②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1월~12월)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 2개 반기 매출액 ② 사업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매출액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연매출액 산출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 증빙 누락 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이후 폐업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p>

3. 확인서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p>※.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십니까?</p> <p>1. 사업참여확인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수료 ②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③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 ④소상공인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함 <p>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연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 ②기준일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1월~12월)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 2개 반기로 계산 ③사업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매출로 환산 후 12를 곱하여 계산 ④매출액 산출에 해당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 세무서에 누락분 신고완료 후 보완하여 산출하며, 폐업일 기준 5년 이 초과하여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표시된 과세기간 중 최근 1년분을 연매출액으로 산출함 ⑤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고정자산(점포, 기계 등) 매각, 권리금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발급일, 품목, 금액 등을 확인 후 매출액에서 제외 가능 <p>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결정 및 관련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	---

※ 매출액 증빙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별지8>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 제외 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표준산업분류	업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